

사단법인 해외석유개발협회 발족



사단법인 해외석유개발협회는 지난 9월 25일 석유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(비상근)에 劉班鍾 석유개발공사 사장을, 부회장(상근)에 尹錫九 전동자부석탄국장을 선임했다.

이 협회는 앞으로 ▲해외석유개발사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참여 방안 협의 ▲석유개발지식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 ▲해외석유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, 교환, 분석 및 발간 등 조사연구 ▲해외석유개발사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 ▲해외석유개발사업에 관한 흥

보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.

이 협회는 정회원 17개사, 준회원 6개사로 구성되어 있다.

<정회원>

- 한국석유개발공사
- 정유회사(5개사) : 油公, 湖油, 京仁, 雙龍, 極東
- 종합상사(6개사) : 三星, 現代, 大宇, 럭키금성, 雙龍, 鮮京

- 자원개발회사(5개사) : 大成, 마주코, 코데코, 現代자원개발, 삼환기업.

〈준회원〉

- 현재 참여추진중인 회사(6개사) : 고려합섬, 동원탄좌, 범양, 한라자원, 동부산업, 동국방직

〈해외석유개발협회 개요〉

1. 창립목적

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통하여 해외석유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사업내용

- 해외석유개발 사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 참여 방안 협의
- 석유개발 지식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
- 해외석유개발에 관한정보의 수집, 교환, 분석 및 발간등 조사연구
- 해외석유개발 사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
- 해외석유개발 사업에 관한 홍보활동

3. 기구 및 조직

(1) 총회(최고 의결기구)
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
- 총회의결사항
 - 정관의 변경
 - 사업계획의 승인 · 변경
 - 예산의 승인 · 변경 및 결산의 승인
 - 회비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
 - 기타 정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

(2) 이사회(최고 의사 결정기구) 및 임원

- 구 성
 - 당연직이사2명(비상근회장, 상근부회장)
 - 과총회 선출직 이사 10명 이내로 구성
 - ※비상근 선출직 이사는 회원중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3년
 - 이사회 의장 : 비상근 회장(당연직)
 - 이사회 의결사항
 - 총회부의 안
 -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- 내규에 관한 사항
-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◦ 대정부건의

-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
- 기타 정관에 정해진 사항

◦ 회장

- 회장은 회원중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하며 임기는 3년

-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

◦ 부회장(상근)

- 상근 부회장은 석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임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, 임기는 3년
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 결의 또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, 협회 통상의 업무를 관장

◦ 감사

- 감사(비상근)는 회원중에서 2명을 총회에서 선임

- 임기는 2년

4. 회원의 자격

◦ 정회원

해외자원개발사업에 의거 주무부 장관의 해외유전개발사업 협약을 득하여 해외에서 석유자원의 탐사,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

◦ 준회원

향후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 예정인 자

해외석유개발협회 기구도표

